

소비자주권 시대와 소비자안전

박 명 희 (한국소비자원 원장)

- 목차 -

- I. 문제의 제기
- II. 최근우리사회에 나타나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문제들
- III. 소비자안전 문제의 대처
- IV. 한국소비자원의 안전관련 활동
- V. 맺는 말

I. 문제의 제기

2006년 소비자 기본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비자 정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Keyword가 소비자 보호에서 소비자 주권으로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Keyword는 소비자중심의 정책기조의 확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시장의 자원배분과 생산유형을 결정한다는 가정 하에 소비자보호의 패러다임에서 소비자주권시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소비자기본법의 제정은 우선 기본가정이 첫째, 소비자 안전의 확보와 소비자 선택기반의 확립, 둘째 소비자 능력개발 및 참여의 확대, 셋째, 소비자 피해구제의 확충, 넷째, 국제적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 다섯째, 새로운 소비문화의 형성 등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소비자주권시대에 진정한 소비자주권시대가 활짝 열려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이상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 사회가 조금씩 개선되듯이 소비자주권 시대는 모든 소비자들의 노력,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기업의 성의 있는 노력 하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소비자 정책, 특히 소비자 안전정책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위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시대에 가장 중요한 Keyword인 소비자 안전문제를 가지고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인 안전이 확보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I. 최근 우리사회에 나타나는 소비자 안전에 관한 문제들

1. 식품안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무엇보다도 먼저 식탁의 위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큰 소용돌이에 몰아넣은 광우병의 논란, AI감염의 우려,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의 우려 등 정말 메가톤급의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여 매우 혼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광우병의 우려

광우병은 최근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때문에 너무나 큰 논란에 둘러싸인 문제입니다. 그간 정부와 전문가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의 안전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우병' 문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관계 당국들이 모든 사항들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문제로 사료됩니다.

* 유전자재조합(GMO)식품의 우려

GMO식품은 그간 안전성에 있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식품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거부감 때문에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간에는 비GMO 옥수수만 수입하여 오다가, 금년도 5.1부터 GMO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되는 GMO 옥수수는 과자, 음료수, 병과류 등 가공식품 전반에 걸쳐 널리 쓰이는 전분당 원료로 쓰이게 됨으로써 소비자 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조류인플레인지어(AI)의 우려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서울에서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AI 발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닭고기, 오리고기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소비자들은 수그러 들지 않는 AI 때문에 AI 질병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인수공통질병에 속하는 AI는 우리나라에서도 토착병으로 고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식품이물관련 사고들

최근 가공식품의 공정과정에서 나타난 식품 이물질 문제도 소비자에게 안전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해주는 사고였습니다. 2005년~7년사이 소비자에게 신고된 식품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보면 식품섭취후 부작용, 이물 혼입, 변질·부패, 유통기간 경과, 효능효과 미흡등 다양한 식품 관련 사고들이 신고되고 있고 특히 식품 이물혼입관련 신고가 늘고 있습니다.

2. 왜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그토록 민감한가?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이 소비자가 식품위험 인지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왜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상황에서는 잘 견디고, 어떤 위험에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험이 생소하고, 즉각적이며, 두려움이나 대재앙의 요소를 포함한다면, 큰 혼란과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 이미 익숙해 있는 위험이며, 천천히 발생하거나, 간접적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느긋하고 침착할 것입니다.

Sandman(1987)은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위해요인의 높고 낮음과 감정적인 반응을 결정하는 "심리요인(outrage) 반응"의 높고 낮음을 결합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했습니다만, 이 모델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때에는 작은 위험에 대해서 매우 놀라고 분노하는 반응을 일으키며, 또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요즈음 소비자들이 접하고 있는 대부분의 식품위험은 「낮은 위해 - 높은 심리요인」를 유발하는 유형으로서 소비자가 위험과 관련하여 토의나 질문의 시간도 없고, 보통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위험의 크기보다는 심리요인 요소가 위험의 수용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식품위해는 다른 분야의 위해와는 다르게 인지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의 식품선택과 섭취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섭취해서 안전하다고 경험적으로 용인될 때 안심하고 수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뢰하는 가족, 친지 등에 의존하여 선택하며, 특정식품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된 경험과 습관에 의하여 익숙해지고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에 따라 소비자들은 새롭고 낯선 식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식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 못함과 두려움 등 심리적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food borne illness)'이 인간에게 수없이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질병은 그 원인이나 치료방법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인간의 통제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정적 불안과 심리적 위험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 사례에 이러한 이론을 적용해 보면, 소비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용한 미국산 쇠고기관련 정보에 따라 그 위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쇠고기의 위해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위해의 두려움의 감정과 심리적 위험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정치적 의도가 혼입되면서 그 위험과 두려움은 사회적, 집단적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부감의 근원적 원인은 그 식품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잘 모르는 식품의 위해로 인한 두려움과 심리적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과학적 지식에 의한 설득과 안심도 증가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소비자는 위험에 익숙해지고 예방하거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품위험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커뮤니케이션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학계, NGO, 업계 등 다방면에서 노력한 결과, 식품위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감축시키려는 식품 위험분석체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지난 5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법에는 식품안전정책을 이끌어 나갈 식품안전위원회가 마련되었고, 도입되어 식품위험 분

석, 식품위험관리, 그리고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주된 요소로 하는 식품위험분석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위험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제공함으로써 정보공유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반영이나, 국민 참여를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험분석이나 위험커뮤니케이션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정책적 기반 없이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체계성이나 그 실효성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 데, 이번 식품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앞으로는 식품관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확충을 통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소비자의 의견반영의 기회는 더욱 확장되었고 정책의 효과는 더욱 증대되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법이 본격 시행되기 까지 시행령 마련 등 다각적이 실무 작업이 남아 있는데, 식품위험의 진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설득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기대해 보면, 일본이나 캐나다와 같이 이미 지방자치계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활성화되어 다양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식품위험에 대하여 안심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능력을 향상시켜 식품위급 상황 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3.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안전문제

신물질과 신제품 개발, 스포츠, 레저용품 등 활동 중에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값싸고 조악한 수입 공산품급증으로 인한 사고 와 새로운 위해요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소비자들의 부주의한 사용 등이 원인이 되는 안전사고 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열기 과열로 인한 화재, 압력밥솥의 폭발, 컴퓨터의 배터리 폭발등과 같은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가구나 주방용기, 세계, 어린이 완구, 유아용품처럼 본질적으로는 덜 위험한 제품이 오작동하거나 소비자들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하게 보이는 위해사고라도 공산품의 경우 대량생산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파 및 그에 수반되는 실질적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와 관련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제거, 최소화 함으로써 보다 많은 위해사고를 줄여 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제품·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제상황은 글로벌경제 체계로 인하여 상품·서비스의 개방 확대로 소비자안전 문제는 매우 넓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축산물은 물론 모든 제품의 글로벌한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위해제품은 이제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III. 소비자안전 문제의 대처

1. 위해 예방을 위한 기본접근 (위해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와 감축실천)

소비자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해예방이 중요합니다. 현대의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제품의 안전사고는 원인규명이 어려우며, 피해범위가 매우 넓으며, 피해의 심각성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처해 봐야 '死後藥方文'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은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사업자가 엄격한 관리를 한다고 해도 결함제품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실제로 위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제품으로부터도 위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식품이물사고 등).

새로운 기술의 신상품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문제를 야기 하고 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함제품으로부터 소비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한 위해사례를 신속히 수집하고 위해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유사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시장에서 유통된 수많은 제품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역순으로 추적하여 위해제품을 가려내고 위해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제거하여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해정보의 수집을 위하여 미국, 유럽 등은 오래전부터 병원들과 연계하여 제품의 위해사고를 보고받는 위해정보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미국 전국의 100개 병원과 연계하여 위해정보전산망(NEISS)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EU도 유럽의 병원들과 연계하여 유럽 전체의 유럽사고조사시스템(EHLAS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위해 정보를 수집하면 2단계로는 수집된 위해의 분석을 통해 위해를 규명하고 3단계로는 위해감축 목표를 설정한 후 4단계로 위해 감축실행, 5단계의 평가 및 환류(feedback)를 통해 위해 정보수집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러한 목적 하에 국내의 종합병원, 소방서 등을 연결하여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위해정보를 통하여 위해제품의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방방재청과의 위해정보의 교류강화를 위하여 MOU 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위해 감축을 위한 단계>

	단계	내용
제 1단계	위해 정보 수집단계	실제 소비자에게 일어난 사고 정보수집, 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병원응급실, 소방서등을 통해
제 2단계	위해의 분석	위험규명, 위험추산, 위험평가, 손상자료분석, 위험요인의 파악등 수집된 정보를 심층조사, 관련자료수집등을 통해 원인분석,(제품시험, 사용자행태,사용환경조사등)위해발생의 특성, 위해의 심각성 검토등을 토대로 위험성 평가,
제 3단계	위해 감축 목표 설정	위해감축 목표설정, 사망자, 사망률,(예, 어린이 안전사고사망자 1명발생시, 160명 입원치료, 2000명이 응급실치료, 4000명이 가정치료의 결과를 고려해 사망률의 하향목표설정)
제 4단계	위해 감축 실행	4E (규제강화(Enforcement), 생활환경개선(Environment) 지식의 증가 및행동변화를 위한 교육,(Education)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Engineering) 의 실행을 위한 위험규명을 위한 소비자 상품의 시장감시활동, 상품과 관련된 안전기준과 규제의 개발, 상품의 조사와 테스트행위에 대한 모니터 활동, 시정활동(위험판단시 즉각적인 개입활동)
제 5단계	평가 및 환류	평가기준, 위해 사례발생건수, 상해자수, 사망자수에대해 설정한 감축목표 달성정도, 적용위해 감축 수단의 활용 및 효율성, 새로운 유형의 위해사고 발생현황등의 평가 위의 평가결과를 1단계로 환류(feedback)시킴

위해정보의 수집 외 예도 소비자들의 위해예방을 위해서는 각 품목별 담당기관들이 선진적인 위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안전에 관한 선진국의 조치를 예로 들면, 1996년 광우병이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유럽에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U위원회는 1997년 '식품법복서(Green Paper on Food Law)'를 발표하면서 식품안전의 정책방향인 농산물의 제조물책임법 적용, 모든 식품에 HACCP의 적용, 건강표시 및 영양표시의 법제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1999년 통합된 식품안전관리기구인 '식품기준청(Food Standard Agency)'의 설립을 공표하고 식품안전 정책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본도 2001년 광우병 발생으로 행정대응을 위해 '광우병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03년에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독립적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예를 참고삼아 우리도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 안전관리기구의 체계화, 소비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해 감축을 위한 실행

위해 감축 실행을 위한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첫째,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한 자율 기준 제정 및 개선을 위한 과정참여 그리고 강제기준의 개발, 둘째, 리콜과 시정조치 같은 준수 활동과 기존규제의 집행, 셋째, 안전 위해에 대한 경보와 안전한 실행에 대한 정보제공, 넷째,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 다섯째, 규칙과 규제에 입각한 산업체 교육, 여섯째, 민사 및 형사 처벌 부과 등 벌칙 적용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 감축을 위한 실행수단>

유형 분류	위해 감축 실행 수단	실행주체
규제 (Enforcement)	리콜제도, 안전기준, 시판품 검사등 시장 감시, 판매금지등 시정활동,벌칙	정부
	사업자 자율규제	사업자
환경개선 (Environment) 교육(Education)	웹사이트, 인쇄물, 언론매체, 캠페인을 이용한 정보제공 및 교육	정부, 사업자, 소비자
기술적 개선 (Engineering)	기준에 적합한 제품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자

김현주(2006) 소비자 위해 감축 방안에 관한 연구 ,P44

• 안전기준의 제정

위해감축의 실행수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안전기준의 제정인데 이는 각 나라마다 규정입안활동을 통해서 또 자율기준을 제정하기도 하고 국제 규약을 제정하는 등 각 국가와 국제적 기준에 의해 기준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위해 분석, 데이터 수집, 기술적 실행관련 연구수행을 통해 기준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최근의 다양한 규제를 풀 어 시장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한 규제들은 소비자의 후생의 차원에서 오히려 강화해야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미국 소고기 수입에 관해서도 기준설정에 관해서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하나의 사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 리콜과 시정조치

식품의 안전이나 위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규제

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한 안전문제는 리콜 시정조치를 통해 위해 감축을 실행하게 됩니다.

소비자안전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위해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드러난 위해제품은 사후적으로라도 시장에서 신속하게 회수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해제품들을 방대한 시장에서 찾아내어 신속하게 리콜하기 위해서는 각 품목별로 리콜의 계획- 리콜의 실행- 리콜실행의 감시 등을 포괄하는 리콜시스템이 완비되어야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리콜 실시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리콜실시와 관련하여 최근에 실시된 미국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해 보고면 , 2008년 4월에 CPSC는 Waxcessories사가 수입한 중국산 전기 주전자 89만개를 리콜 한 바 있습니다. CPSC는 이 주전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소비자가 없는데도 화재위험 가능성 때문에 리콜을 실시한 있습니다. 한편 2008년 1월에 CPSC는 Campbell Hausfeld사가 수입한 중국산 공기압축기가 화재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23만개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이들 2가지 사례는 모두 소비자가 제품으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사전에 화재 위험을 파악하여, 리콜을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해제품에 대한 리콜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위해정보의 수집, 기업의 리콜실행 등 리콜운영 시스템의 완비를 우리나라도 시급히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소비자 정보의 제공과 교육

소비자안전을 위한 위해예방-위해제품의 시정조치 등과 같은 소비자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문 제외에도 소비자들이 안전과 관련하여 스스로 주의하도록 만드는 활동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안전 문제는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중에 주의하여야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성격도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CPSC가 하는 정보제공활동에는 기업과 해당 위해와 관련이 있는 단체와 연계하여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CNN,CBS,AP USA Today 같은 전국 방송국과 일간신문, 라디오는 물론이고 지역 TV,지역신문등에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 언론 홍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제품별로 안전한 사용요령, 경고표시 등이 바르게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주의하도록 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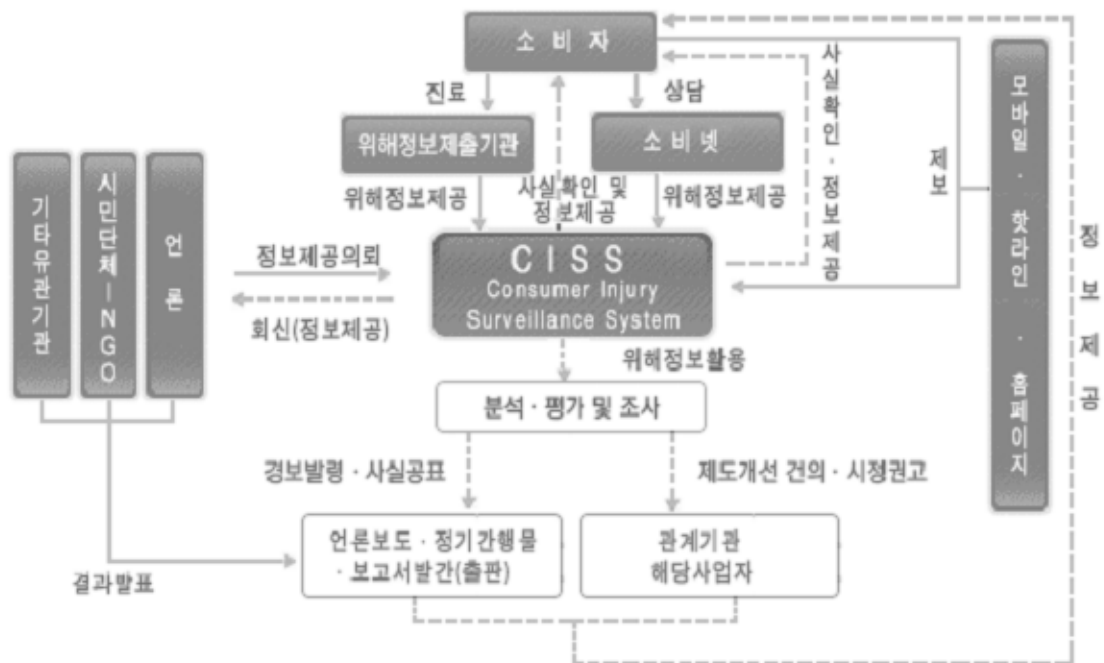


그림 1 CISS 체계도

IV. 소비자원의 안전관련 활동

소비자원에서 소비자 안전센터가 법정기구화가 된 2007년 이후부터 더욱 적극적인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안전센터는 소비자 위해 정보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CISS(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에는 83개의 위해 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만건의 위해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소비자 위해 정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과 소비자 안전정책의 경제적 편익 및 효과 분석 및 소비자 위해 다발 분야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07년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 활동>

	추진 내용
1	소비자 위해 정보 관리 체계인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CISS) 운영 관리
2	위해정보 위원회를 통한 위해성 평가· 분석 및 조치방안 심의
3	위해정보 수집 활용 발전 방안 연구
4	소비자안전뉴스 발행을 통한 관련 정부부처, 학계, 지자체, 위해정보제출기관 등 소비자안전네트워크 관리
5	리콜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및 통합리콜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6	식품분야 리콜운영 실태 조사
7	소비자 안전정책의 경제적 편익 및 효과 분석 연구
8	소비자위해 다발 분야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수입공산품, 장난감용 불꽃류, 세탁기 화제, 브래지어 및 관련용품(브라패드, 수유패드), 종이타올(키친, 핸드)류, 자동차제작용결합, 슬라이딩 자동문, 공기청정기 품질 표시, 차량용 네비게이션, 유통기한 경과 수입올리브유, 쇠고기 방부제 함유 및 표시, 축산물 안전, 수입과일 잔류 농약, 삼계탕용 한약재, 대형유통업체의 식품관리 실태조사, 수입건포류, 비비크림, 식품원산지(식용유), 맥주 표시, 정수기 위생, 한약재 곰팡이 독소, 수입사료 동물성 성분, 이물규명 분석방안 및 실태 모니터링)
9	노인 안전 종합대책 마련
10	노인관련 시설 안전 실태 조사
11	고령자 용품 품질 검사
12	장애인 이용시설 안전실태 조사
13	어린이 안전 넷 운영 관리
14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15	놀이공원 안전 실태조사
16	어린이 대상 색조화장품 안전성 조사
17	어린이 생활안전 위해정보 심층조사
18	영유아 복용 시럽형 일반감기약 안전 실태조사
19	어린이 음료 용기·포장 안전 실태조사
20	아이스크림 제품류 안전 실태조사
21	분유 일회용 제품 안전 실태조사
22	식의약품 위해정보 심층조사
23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품질 시험

*자료원: 200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에서 재정리

V. 맺는 말

OECD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비용/편익 분석 권고안(한국 소비자 보호원, 2003)에 따르면 안전 사고로 인해 소요되는 사고후 사회적 비용과 안전검사비용, 정보수집 및 처리비용, 교육비용등 사고 예방비용과 비교해 볼 때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엄청나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경우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해정보의 수집을 시작으로 하는 안전정책이 아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해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시작으로 위해의 정확한 분석과 분석을 통한 위해 감축의 목표설정등이 이루어 져야 하나 최근까지는 이러한 소비자 정책이 심도있게 실효성을 갖추어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광우병 쇠고기를 비롯해 조류독감문제, 식품이물질 문제등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 이슈들이 문제시 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의식이 놀랄만큼 민감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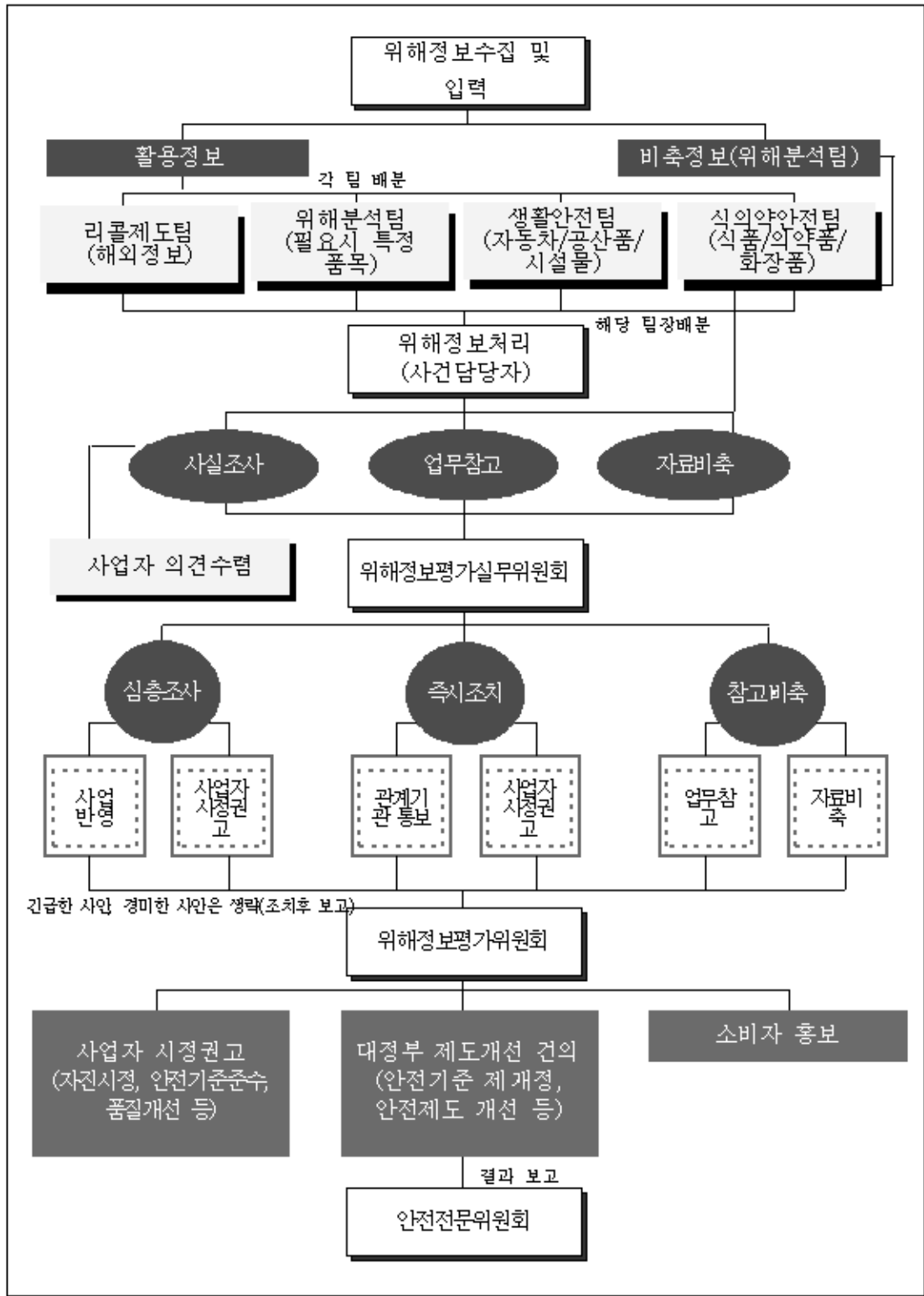
사실, 소비자주권시대에 소비자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소비자안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소비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안전불감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미약한 대응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미국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관한 문제를 보면 구체적으로는 쇠고기의 위해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위해의 두려움의 감정과 심리적 위험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과 두려움이 사회적, 집단적 범위로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부감의 근원적 원인은 그 식품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잘 모르는 식품의 위해로 인한 두려움과 심리적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과학적 지식에 의한 설득과 안심도 증가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소비자는 위험에 익숙해지고 예방하거나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국보1호인 '송례문 화재'라는 재앙을 목격하였습니다. '송례문 화재'도 안전불감증이 빚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보험부담금이 큰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에 대한 의식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우리들 주변의 시설물, 교통, 도로 등은 허술하게 놔둔 것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자안전문제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할 일이 매우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안전 문제의 대처에 왕도는 없을 것입니다. 소비자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안전관리기구의 체계적 정립, 각 품목별 안전시스템 등의 문제를 하나 하나 점검하고 보완하여 소비자주권시대에 소비자안전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정책의 강화가 더욱 더 요청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소비자 정책 교육학회에 소비자 주권과 소비자 안전이란 주제는 진정으로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많은 연구자들이 충분히 발표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책적 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추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처리 절차



<참고 문헌>

- 김현주(2006) '소비자 위해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배순영 외(2006) '소비자안전체감지수의 개발 및 산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송순영 외(2004) '증장기 소비자정책 로드맵',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이기현(2006) '식품안전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이종인(2006) '소비재 리콜제도의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 2008년 지역소비자행정 워크숍 자료집(2008),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 2006 소비자의 날 심포지엄 자료집(2006)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발전과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소비자원
- 2007 공청회 자료집-'리콜가이드라인 제정 공청회',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